

부산광역시사하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안사유

제2의 건국중앙위원회 해체 및 운영규정 폐지에 따라 區 조례를 폐지하여 제2의 건국 업무를 정비코자 하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사하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 폐지 (조례 제429호)

3.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

- 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운영규정폐지규정 (대통령령 제15903호)
- 행정자치부 지시공문

4. 검토의견

제2 건국 중앙위원회 해체 및 운영규정 폐지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폐지 지시에 의거 각 자치단체의 관련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2003. 10.

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윤 병 성